

7.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37호 2000. 2. 9

개 정 이 유

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기 위한 신고기간의 변경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등으로서 그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담금의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(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)내로 조정함.
- 나.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가 부분준공된 경우등에는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 전체 개발사업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함.

주택회보